출자회사 취업심사 관리지침

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

제정 2021. 12. 22. 지침 제354호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 등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① "퇴직 임직원"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평원"이라 한다) 의 임원 또는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.
- ② "출자회사"라 함은 심평원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회사를 의미한다. 제3조(적용범위)이 지침은 심평원이 최대주주이면서 임원 임면권 행사 등으로 출자회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한다.
- 제4조(다른 법령등과의 관계)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에 대한 취업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다른 제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제5조(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등) ① 심평원의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회사 취업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고 한다)를 구성하여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의 승인 여부
 - 2. 「공직자윤리법」,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, 심평원「임직원 행동강령」등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사유 유무 등
 - 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은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원장은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심사내용 확정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상임이사로 하며, 내부위원은 본원 부서의 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
-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외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교수, 변호사, 공인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
 - 2.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
 - 3.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
- 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,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8조(외부위원의 해촉) 원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심평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
 - 2.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3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
- 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10조(회의의 운영)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표 심사평가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·수신할 수 있다.
- 제11조(대리 참석)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 참석한 자는 의결권한을 가진다.
 - 1. 질병,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
 - 2.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② 내부위원의 경우 부장급 이상의 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해야 한다.
- 제12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직원,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

다.

- 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과 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2.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·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② 당해 사안의 관계직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기피여 부를 결정해야 한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심의・의결을 회피해야 한다.
 -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제척·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심의·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를 충족하는 때까지 원장에게 해당 사안에 한정하여 심의·의결에 참석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자회사 관리부서의 관련 부의 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간사는 의사록 작성 등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다.
 - ③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모두의 서명을 받는다.
 - 1.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
 - 2. 심의사항 등 의결내용
 - 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제15조(비밀유지)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심평원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,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7조(보칙)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취업심사 기준 및 정보 공개

제18조(취업제한) ① 다음 제1호·제2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임직원 또는

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.

- 1.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일이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2. 퇴직 전 5년간 심평원 소속부서의 업무가 출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
- 3.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
- ② 제1항의 제1호·제2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.
 - 1.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
 - 2. 직제나 정원의 개정·폐지,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
 - 3. 출자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(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)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5.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출자회사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
 - 6.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는 직원에 채용되었다가 퇴 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
 - 7. 부서원으로 근무했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출자회 사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 - 8.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·자격증·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- 제19조(이의신청 등) ①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이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정 시 심사위원을 재구성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.
 -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이의신청 및 재심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자는 위원회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.
 - ⑤ 그 밖에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 시 주요사실의 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사후에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심사 하여야 한다.

- 제20조(취업해제요청) ①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이 제5조제3항의 신고를 누락하고 임의로 출자회사에 취업하거나 제18조제1항의 취업제한 결정을 위반하여 출자회사에 취업한 경우, 원장은 해당 출자회사의 장에게 해당인의 취업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출자회사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예외규정) 「공직자윤리법」에 의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 되거나 승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22조(정보의 공개) 원장은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심평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알리오)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.
 - 1. 성명, 직위(급)
 - 2. 퇴직일자
 - 3. 재취업회사명, 직위(급)
 - 4. 재취업일자

부 칙<지침 제354호, 2021. 12. 22.>

이 지침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청렴서약서

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출자회사 취업심사위원으로서 맡은 바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,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통하여 국민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- 1.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,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.
- 2.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·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.
- 3.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·항응을 받지 않으며,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.
- 4.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 및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 하겠다.

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.

20 년 월 일

출자회사 취업심사위원 성명: (서명)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

퇴직자 취업 심시위원회 심사평기표

1.	취업제한사유	해당여부	(1)(2)	모두에	해당핰	경우	재취언	제하	대상	0	Χ로	丑人	J
			いエルモノ	<u> </u>	1102	0 1	71111	**11 🗀	-110,	v.	/—		

항 목	김○○	0 @@
① 퇴직 후 3년 미경과 여부		
② 퇴직전 5년간 심평원 소속부서의 업무와 재취업회사의 업무관련		
③ 재직중 부패행위로 해임·파면된 경우		

2. 취업제한 예외사유(1번의 ①, ②번 모두 해당시 2번으로 이동) (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승인 가능, 해당항목에 O 표시)

· 무	김〇〇	0 00
①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이익		
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, 정원 초과 등으로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		
③ 출자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		
④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자 (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포함)로 해당산업분야 발전에 기여		
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에 따라 선임되는 경우		
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후 임용 전 종사분야에 재취업		
⑦ 부(팀)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후 심평원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		
⑧ 취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후 심평원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		

3. 종합 심사의견(최종 취업심사 통과 유무, 사유 명기)

20 . . 심사위원 (서명)

퇴직자 취업 심시위원회 심사평가표 설명자료

- 1. 취업제한사유 해당여부 (①~② 모두에 해당할 경우 재취업 제한 대상)
 - ①~② 모두 해당할 경우 취업제한 예외사유로 이동
 - (①~②이 모두 미해당일시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취업 제한사유가 없는 것으로 봄, 퇴직후 3 년이 경과된 자는 취업심사대상자에서 제외,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참조)
 - ② 소속부서의 업무 구분
 - 부(팀)의 장 및 소속직원의 경우 : 해당 부(팀)의 업무
 - 부(팀)의 장보다 상위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[부서의 장인 경우] : 해당 부서의 업무(예) A직원이 2021.1.15. 실장으로 승진, 2021.8.30. 퇴직
 - : 2021.1.14.까지는 A가 소속한 부(팀)의 업무를, 2021.1.15. 이후에는 해당 부서 업무 검토
 - ② 심평원 소속부서의 업무(퇴직전 5년간)와 해당 출자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
 - :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성이 있다고 봄
 - 출자회사의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·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(예) 출자회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 승인과 관련, 심평원의 최종 결정권자
 - 출자회사의 생산방식·규격·경리 등에 대한 검사·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- (예) 출자회사의 심평원 유자격 등록 또는 그 심사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출자 회사 결산에 대한 감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임직원
 - 출자회사의 공사,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- (예) 출자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계약, 인수 및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임직원
 -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
 - (예) 출자회사 주주로서 법령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심평원의 최종 결정권자
 - 출자기업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(예) 출자회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, 그와 같은 제재를 위한 조사와 심의에 관여한 임직원. 단 내부 검토과정에 관여한 실무자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봄)
 -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출자회사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(예) 출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자산 혹은 지분 매각, 자금조달, 채무보증 등 재산상의 권리와 관련하여 심평원의 최종 결정권자
- 2. 취업제한 예외사유 (취업제한 사유 해당에도 불구하고 승인할 경우)
 - 취업 제한 예외사유 중 **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승인 가능**(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 제4항 참조)
 - ⑦ 본인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판단 : 1. ② 소속부서 업무의 관련성 판단 기준 참조
 - ⑧ "취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"
 - : 취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·자격증·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 되는 경우

3. 종합 심사의견

○ 취업제한 사유, 취업제한 예외사유 및 기타 인적사항(퇴직사유, 경력사항 등)을 참조 하여 종합적인 취업심사 의견 제시